



표현의 자유, 개인정보보호 측면에 본 ECJ판결

양 흥 석 변호사(법무법인 이공)

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4-2 일신빌딩 3층
T +82-2-2038-3620 F +82-2-2038-3621

이번 판결의 긍정적 측면

1 검색엔진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Google에 대한 판결

-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Google에 대한 판결
-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고, 체계화될 경우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, 사적 감시의 일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우려에 따른 판결
- 특정 개인의 정보 생산보다는 **정보의 확산 측면에 방점**을 둔 판결

2 일반대중의 압도적 관심과 개인의 권리를 형량한 결과에 따른 판결

-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정보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보면 16년전 경매정보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것임
- 해당 정보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“잊혀질 권리”를 무조건 인정(잊혀질 권리의 절대적 우월성)한 판결은 아님
- 정보주체의 공적생활에서의 역할(the role played by the data subject in public life), 일반대중의 압도적 관심(the preponderant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)을 이유로 한 형량을 한 결과임

이번 판결의 긍정적 측면

3

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Google에 대해 어떤 행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판결

- Google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, 해당 정보를 어떤 곳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Google에 대해 특정 정보의 삭제, 수정 등을 요구할 때 Google본사를 상대로 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, 이를 해결해 준 판결
- 국내에서 Google, Google Korea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시에도

4

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

'이름' 을 이용한 검색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하라고 한 판결

- 스페인고등법원이 곤잘레스의 이름이 포함된 경매정보의 링크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이용한 검색결과(a list of results displayed following a search made on the basis of his name)에서 해당 경매정보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것임
- 원본 경매정보가 공고된 신문기사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'이름'이 아닌 다른 검색어로 검색결과로 현출가능함

이번 판결의 문제점

1

구체적 형량과정에 관한 실시없이 추상적 기준(시간의 경과, 대중의 압도적 관심)만으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움

- “잊혀질 권리”가 일반적으로 이용자나 검색엔진 운영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,
- 대중의 압도적 관심을 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대중의 압도적 관심을 받는 정보인지에 대해 실시하지 않음
-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했던 정보가 EU 지침에 위반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의 위험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,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“부적당하고, 부적절하거나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” 정보가 되는지에 대한 실시 없음
- 기준의 모호함에 사업자에게 법적 위험 회피경향이 더해지면 과소삭제의 폐해보다는 과다삭제의 위험을 증가하고, 과다삭제로 인한 **검색엔진의 불완전성이 심화**될 우려가 있음
- ‘이름’을 기초로 한 검색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선택적 삭제를 허용하는 것은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,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판단(검색엔진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위험성)

이번 판결의 문제점

2 정보접근비용의 증가와 표현의 자유

- 검색결과에서 해당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함으로써 인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보접근 비용 증가
- 해당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정보에 관한 표현의 자유(알권리) 등이 제약되는 결과발생
- 특히 '이름'을 기초로 한 검색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'이름'과 당해 정보의 관련성이 단절되는 효과
 - 즉, 이 사건과 같이 '곤잘레스'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경매정보 링크가 삭제되면, 검색하는 사람으로서 곤잘레스와 관련이 있는 경매정보의 존재 자체를 인지할 수 없게 됨
- 원본 정보가 삭제되지 않더라도, 검색결과에서의 링크 제거만으로 해당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효과로 인해 표현의 자유(알권리)측면에서 유효한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해짐(특정 정보의 활용을 정보주체가 차단할 수 있고, 이로 인해 적법하게 발행된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 있음)

이번 판결의 문제점

3 합법·정확한 정보의 유통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(알권리) 제약

- 해당 경매정보는 '곤잘레스'의 이름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신문에 합법적으로 게재된 정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, 사생활침해 정보의 삭제와 논의평면을 달리함
- 해당 경매정보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확해질 수 없는 정보임. 다만, 경매절차 개시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정보의 업데이트가 없어 부정확해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해당 경매정보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음
- 합법·정확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유통금지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(알권리)를 제약할 우려 있음
- **대중의 관심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(잠재적 관심), 합법·정확한 정보의 사회적 활용가능성이 봉쇄될 우려가 큼**

이번 판결의 문제점

4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, 사적 검열의 일상화

- 해당정보의 링크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색엔진 운영자의 판단에 맡김
- 정보주체의 주장(삭제요청)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
- 해당정보의 민감성, 해당정보의 공공성에 관한 판단이 검색엔진 운영자의 책임, 업무 경감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 큼(이로 인해 해당정보의 민감성을 과대평가, 공공성은 과소평가될 우려)
- 검색엔진 운영자가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과다삭제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수단이 없음
- 해당 정보의 발행자가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링크를 복원시켜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모호한 상황(해당 정보의 발행자에 대한 통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)
- **사기업에 의한 정보의 선별적 유통이 일상화**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(알권리)에 대한 제한임

합리적 정보유통방안에 관한 제언

1

불법정보의 삭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, 합법정보의 합리적 삭제범위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

-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정보(또는 해당 링크)의 삭제는 허용
-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법정보의 존재를 인정한다면,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관건임
- 이번 ECJ판결과 같이 “일반대중의 압도적 관심”을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움
- 정보주체의 특성, 해당정보의 특성, 정보유통매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2

정보유통여부에 관한 판단을 사법심사로!

- 정보유통에 관한 기준은 권리충돌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
- 사회적 합의를 발견하고 구현해내는 역할을 사기업에 맡길 수 없음
- 정보유통의 문제에 관한 중립적 판단주체는 현실적으로 법원이 될 수밖에 없음
- 정보의 발행자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은 불가능
- 정보주체, 해당정보의 유통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이 사법심사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



감 · 사 · 합 · 니 · 다

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4-2 일신빌딩 3층
T +82-2-2038-3620 F +82-2-2038-3621